

보육교사 자격기준 설명회 일정

시간	내용
13:30~14:00	준비
14:00~14:50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보육실습 기준 안내
14:50~15:00	휴식
15:00~15:50	단체신청 방법 안내
15:50	마무리

2022년

보육교사 자격기준 안내

2022. 11.

목차

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개요
2. 보육교사 자격기준 세부사항
3. 보육실습 세부기준
4. 질의 응답 Q&A

PART 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개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인정 기준만 갖추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 자격을 인정
-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불가
- 이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영유아보육법」 개정(제7153호, 2004.1.29.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2005.1.30. 이후부터 시행
 - 「영유아보육법」 개정(제7785호, 2005.12.29.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 2006.12.30. 이후 시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서 특수교사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2011.8.4.), 시행(2012.8.5.)되어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21호, 2015.7.1.)에 따라 2015.7.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를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 (배치시기) ·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 부터
 -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수여권자 및 자격검정 · 발급기관

| 수여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 자격검정 및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법령

|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연도별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 (2014) 2급 교과목 상향(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2017) 대면교과목 지정(9개), 실습기준 강화(160시간 ⇒ 240시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일반 어린이집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가정 어린이집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40인미만 어린이집

·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05. 1. 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p>장애아전문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 학과 전공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p>일반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급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정교사 1급 or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자 · 초등학교 정교사 or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사회복지사 1급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간호사 +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p>가정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 보육교사 1급 + 1년 이상 보육업무
<p>영아전담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 간호사 + 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p>40인미만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1.29.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보육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소지자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및 보육업무 경력 소지자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소지자

보육교사 3급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당시(20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각각 법 제22조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신청절차		내용	주체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인
개인 자격증 신청	인사기록 카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정보, 경력, 학력, 보수교육, 교육훈련 정보 작성 및 등록 자격증 제작을 위한 증명사진(3*4) 파일 등록 	신청인
	자격종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종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학력 등 기본정보 확인 및 자격증 배송지 주소 등록 	신청인
	수수료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신청인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신청절차

서류제출

자격검정

자격증
(자격확인서)
발급

내용

주체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별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신청인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처리기한)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공휴일,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검정 단계별 진행상태

진행상태	내용
서류접수완료	신규/추가 서류접수 후, 자격검정 대기
보류	자격검정 결과 보완서류 추가 제출 시 재 검정 (보류 된 이후, 30일 이내에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인정	자격요건 충족으로 인정
불인정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불인정
심의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대기

진흥원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우편발송

진흥원

PART 2

보육교사 자격기준 세부사항

☑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관 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 대학 입학 또는 학위취득 시점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확인

구분		2016.8.1. 시행	2014.3.1. 시행	2005.1.30. 시행
교과목 이수기준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6개 영역 12과목 35학점
적용 기준	대학 입학자	2017.1.1.~입학자 ※ 편입, 재입학등의 경우 1. 편입, 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입, 재입학한 동학년의 이수기준에 따름 2. 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름	2014.1.1.~2016.12.31 입학자	'05.1.30. 이후 입학자 및 편, 재입학, 전과, 복수전공 신청자부터
	학점은행제 등 학위취득자	2018.1.1. 이후 학위취득자	2014.3.1.~2017.12.31. 학위취득자	'05.1.30. 이후 교과목 이수한 학위취득자 부터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개정, 2016.8.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개정, 2014.3.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4호, (2005.1.29. 개정, 2005.1.30. 시행)



대상별 적용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입학년도 기준

- 편·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재입학한 동학년생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 기준 적용
- ※ 2017년에 3학년 편·재입학한 경우, 2015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적용

|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

학점은행제 를 통한 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백석예술대학, 세계사이버대학, 영남사이버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 학위취득일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졸업 후 나머지 교과목을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하고 학위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기준으로 이수 기준 적용
- ※ 2014년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졸업 후, 2022년에 나머지 교과목을 학위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기준으로 적용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
*「평생교육법」제31조, 제33조

1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대학) 2017.1.1.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학점인정 기관)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

영역	구분	교과목	과목(학점)
교사 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e0b2;"> <p>! 중복인정불가</p> <p>-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영역은 교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며, 괄호 안 교과목의 경우 중복인정불가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과목만 인정)</p> </div>	
보육실무			2과목 (6학점)
전체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2 대면교과목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교과목 (보육실습 포함)
-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별도 실시
- 보육실무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영역	교과목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사이버 대학 등 원격 교육기관에서는 '성적증명서에 대면 이수 여부를 표기'하거나 '대면 교과목 확인서'를 통해 확인

2 대면교과목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 (실시방법) 과목당 8시
- 보육실무영역의 교과목

영역
교사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실무

■ 대면 교과목 확인서(2017.1.1.이후 입학자)

대면 교과목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 번 :
- 전임학과명 :
- 대면 교과목(명) 확인내역

구분	법정교과목	이수교과목	이수년도	대면교과목 이수 여부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예) 보육교사론	(예) 2017	(예) 이수
	아동권리와 복지			(예) 미이수
보육관련 지식 및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화, 아동미술)	(예)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보육실무 영역	아동안전관리 (또는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 제2호에 따른 '대면 교과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상기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복지

작, 아동미술),
(또는 아동생활지도)

습

'대면 교과목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사이버 대학 등 원격 교육기

3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대면교과목 보완 운영 안내

운영방법

구분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대면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화상 수업 인정 · 온라인 시험 불인정 · 집중수업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화상 수업 인정 · 실시간 화상 시험 인정 · 집중수업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교육 ·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등의 경우,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 증상 발현자)의 출석수업 · 시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교육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 실시 인정</u> · *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공통

- 별도 심의 없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적용대상

- 현행기준(2016.8.1. 시행) 대상자,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현행기준(2016.8.1. 시행) 대상자 인정범위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종전기준(2014.3.1. 시행)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적용대상) '18.1.1.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영유아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문학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현행기준(2016.8.1. 시행) 대상자 인정범위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영유아발달' 교과목 이수가 불가한 경우

(적용대상) '17.1.1.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18.1.1.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유아발달	영아발달 +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영아발달' '유아발달' 과목 이수로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개정 영역 (3개영역) 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 인정범위 -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현행기준(2016.8.1.)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적용대상) '14.1.1.이후 부터 '16.12.31.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14.3.1.이후 부터 '17.12.31.까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영유아교육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4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 인정범위 -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대상) '14.1.1.이후 부터 '16.12.31.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아발달, 유아발달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영유아발달 +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선택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
		영유아발달 +	개정기준 3개 영역 중, 선택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

유사교과목 심

- 법령교과목과 (기 인정된 유사교과목 포함)
- 심의결과는 동

유사교과목 심

- 유사교과목 심
-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이

○○ 대학(교) 학과/○○ 교육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
 경 유
 체 목 ○○대학(교) ○○학과/○○ 교육원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학(교) ○○학과/○○ 교육원에서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가. 심의대상자: 총 ○○명
- 나. 심의요청 내용

자격기준 구분	법령교과목	유사 교과목명*	이수연도/이수 학기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대상자
17과목 51학점 (6개영역)	○○○○	○○○	○○/○학기		○○○
17과목 51학점 (3개영역)	□□□□	□□□□	□□/□학기		□□□외 ○○명

*대상자가 이수한 교과목 명

- 붙임 1. 심의대상자 명단.
- 2. 해당학기 강의계획서, 끝.

○○대학(교) 학과장/○○교육원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경우 심의 진행
 타 대학은 미적용)

록 9)
 역본 제출)

☑️ 교육훈련시설 입학시점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확인

구분	2016.8.1. 시행	2005.1.30. 시행
교과목 이수기준	3개영역 22과목 65학점	6개 영역 12과목 35학점
교육훈련시설 입학기준	2016.8.1. 이후 입학자	2005.1.30. 이후 입학자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개정, 2016.8.1.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4호, (2005.1.29.개정, 2005.1.30.시행)

1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적용대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적용기준) 3개영역, 22과목 65학점 이수 필수, 보육실습 교과목은 보육교사 2급 기준 준용
- 과목당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2급 기준을 준용하여 80점 이상일 경우 인정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및 지도, 아동생활지도,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지도, 아동수학지도·아동 과학 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교재교구개발, 부모교육, 영유아건강지도, 영유아 영양지도, 아동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관리	18과목 (52학점)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 보육실습	2과목 (7학점)
전체	22과목(65학점) 이상	

2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운영방법

구분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수업 인정 · 동시적 원격 수업 인정 · 동시적 원격 시험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수업 인정 · <u>출석확인이 가능한 수업(동시적 원격수업) 인정</u> · 동시적 원격시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교육 ·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등의 경우,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 증상 발현자)의 출석수업. 시험 제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교육기관 자체계획 수립 및 시·도 승인시 인정</u> *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보고방법

- 교육과정을 집중수업, 출석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으로 대체운영시, 계획 수립 및 시·도에 사전 승인 필요

PART 3

보육실습 세부기준

현행기준

☑ 실습기간

- 6주 240시간
(2회로 분할실습 가능)

☑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등급 A, B(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증 유지)인 어린이집**
 ※ 매월 15일 전후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평가내용 반영되므로, 해당일자 근처 실습하는 학생은 반드시 **당일에 어린이집에 등급확인 요망**
-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의무평가제로 전환(19.6월 시행) 되면서 실습기관 기준이 '평가인증 유지'에서 'A, B등급 이상'으로 변경됨

코로나19 실습기준

2020년 1학기 ~ 2022년 1학기 적용

☑ 실습기간

- 4주 직접실습(160시간) + 2주 간접실습
(2회로 분할실습 가능)

☑ 실습기관

- 현행기준과 동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습 참여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 (역제)	가능
2단계 (지역 유행)	자제
3단계 (권역 유행)	
4단계 (대유행)	금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시기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연속하여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참고사항	실습시간의 하루에 8시간 기준
<p>※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교사 겸임 인정 조건으로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및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지도교사로 겸임할 수 있음(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213)</p>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평가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간접실습 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2020년 1학기에 보육실습 6주 240시간 중 2주를 간접실습으로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성 명 : ○○○
2.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3. 양성교육기관: ○○대학교 ○○학과
4. 학번 :
5. 간접실습 내용

담당교수	간접실습기간	간접실습시간	간접실습방법
○○○	20.000 ~ 000	○○시간	세부 운영방법 기재

년 월 일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해당 양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13] 간접실습확인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간접실습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대체운영 가능(양성기관 내에서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간접방식으로 운영)
- ※ 2주 간접실습 이수 시, 4주 직접실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 ※ 6주 240시간 동안 직접실습을 이수한 자는 '보육실습확인서'만 제출

1

실습운영

실습시기 및 기간

인정시간

실습기관

지도교사

-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으로 운영
- 평가점수 80점(B학점) 이상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인정
- 3학점 기준으로 이수

※ 보육실습을 1, 2로 나누어 개설한 경우 합산한 학점이 총 3학점 이상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 이상으로 이수)

실습운영

2

실습기간 및 시기

인정시간

실습기관

지도교사

- 6주 240시간
- 2회로 분할실습 가능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2회 분할 실습 방법

-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학기 내 (전·후 방학 포함)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 학기를 달리하여 보육실습 교과목(1, 2)을 개설한 경우
개설학기 전후 방학에 각 1회씩 나누어 실시

실습운영

실습기간 및 시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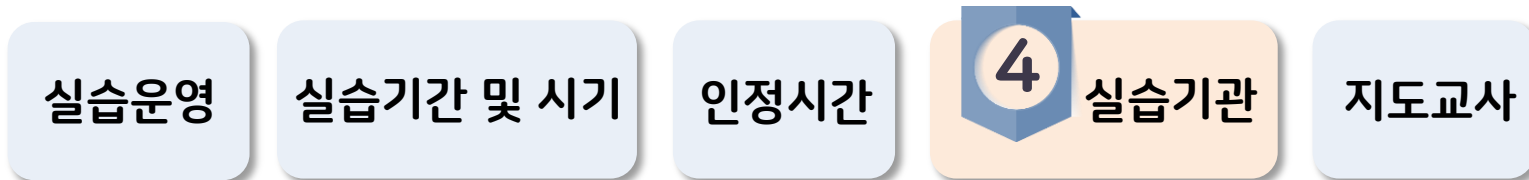
인정시간

실습기관

지도교사

- 연속하여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만 실습 인정**
- 보육실습 시간은 하루에 **8시간**

※ ex) 오전 8시30분 ~ 오후 4시30분 실습은 하루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정불가



구분	기준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원 15인 이상
<p>선택사항 (세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에 해당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평가제 결과 실습시작일 기준으로 A, B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2019.6. 이후) • 평가인증제 결과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2017.1.1. 이후)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실습운영

실습기간 및 시기

인정기간

실습기관

5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원장, 학과장(교육원장) 직인을 받아 원본 제출**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2017.1.1. 이후 양식) 원본
-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
-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확인서(유치원 실습)에 한함**
(단, 보육실습확인서 기관종류에 '방과후 과정 유치원' 기재 시 확인서 제출 불필요)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양성교육기관명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기관종류	최초인가일	년 월 일
실습기관 인가 정원			
구분	평가제	평가 등급 (평가 주기 시작일)	년 월 일
	평가인증제	인증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 어린이집은 운영형태(가정, 민간, 직장, 국공립 등) 기재,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운영 여부 기재

3. 실습 지도교사

이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실습시간	총 시간(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시 ~ 오후 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13. 3. 1. 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침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 등록 및 제출
○ 보육실습 내용 시스템 미등록자는 첨부서류(①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②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육실습 **시작** 당시의 어린이집 정보를 기재
*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면 평가인증 유효기간 기재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와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통합**

※ 해당 양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12] 보육실습확인서 (2017.1.1.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보완 운영 안내

운영방법

구분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보육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주 직접실습 + 2주 간접실습 · 2회까지 분할실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주 직접실습 + 2주 간접실습 · <u>2회 이상 분할실습 허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주 직접실습 · <u>2회 이상 분할실습 허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실습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교육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직접 실습에 준하는 간접실습 허용</u> *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등의 경우 분할실습으로 직접 실습 수행

보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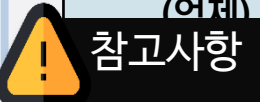
- 보육현장실습을 4주 직접실습과 2주 간접실습으로 진행한 경우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 간접실습확인서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하여야 함

* 6주 240시간을 모두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간접실습확인서' 제출 불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습 안내사항

안내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외부인 출입관리 기준
1단계 (어제)	가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2단계 (대유행)	금지	* 예방접종 미완료자이나 어린이집의 필수적인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등 원장의 판단에 따라 아동 및 보육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증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5.1., 2주째: 5.15., 지침 적용일: 5.16. 0시부터



보육실습 유의사항!



실습기관 기준

어린이집 평가등급(의무평가제) 또는 인증유지상태(평가인증제) (실습 시작일 기준)

※ 미인증, 인증종료, 인증취소 사유 발생, 평가등급(A,B) 미만 여부 확인 必

※ 2회로 분할 실습의 경우, 각각의 분할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 유지 必



실습연도별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실습생 미등록시, 실습연도에 맞는 확인서 양식 사용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서식자료] 에서 다운받아 사용



비연속 실습 증빙자료

어린이집의 가정학습기간, 실습생 병가, 코로나로 인한 휴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제출

※ 가정통신문(직인 必), 진료확인서, 코로나 관련 지자체 발행 공문 등



보육실습 참고사항!

☑ 보육실습 지도 시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콘텐츠 활용



온라인교육과정

오프라인교육과정

학습지원

마이페이지

온라인교육과정

온라인교육과정

- 어린이집평가지표 >
- 다문화보육 >
- 시간연장형·시간제보육 >
- 안심보육교직원연수 >
- 보육실습지도 >**
- 보육사업안내교육 >
- 장애아통합보육 >

보육실습지도

홈 > 온라인교육과정 > 보육실습지도

- 관심과정은 과정이미지의 하트를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총 2건 (1/1Page)

과정명 :



어린이집용 보육실습 지도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2019년 6월)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 안내
(기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변경)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어린이집)하는 어린이집

* 상기 내용은 온라인교육 자료에는 미반영 되어 향후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수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강의수
총 3 강



양성기관용 보육실습 지도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2019년 6월)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 안내
(기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변경)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어린이집)하는 어린이집

* 상기 내용은 온라인교육 자료에는 미반영 되어 향후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수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강의수
총 3 강



보육실습 참고사항!

보육실습기관 선정 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활용

투명한 보육정보를 위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통합정보공시

위반사실의 공표

어린이집 평가

보육정보공개API



! 확인사항

※ 15일 전후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평가내용 반영되므로,
해당일자 근처 실습하는 학생은 반드시 당일에 어린이집에 등급확인 요망

*평가참여 *인증(1회) *재인증(2회) *재인증(3회) *재인증(4회) *재인증(5회)

· 선택된 지역 : 서울특별시 > 용산구

총 검색 결과 : 96건 (평가인증시설 : 96개, 공공형 : 0개)

선택	순번	어린이집명	시도/시군구	*분류	*평가결과	*정원	*현원	연장 보육	위치	즐거 찾기
<input type="checkbox"/>	96칼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 용산구	직장 일반	A	49명	39명	N	🔍	★
<input type="checkbox"/>	95어린이집	서울특별시 / 용산구	직장 일반	A	85명	68명	N	🔍	★



보육실습 참고사항!

보육실습기관 선정 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활용(평가제)

평가 < 정보공시 - Internet Explorer

http://info.childcare.go.kr/info/pnis/search/preview/AppraisalAuthenticationGradeSIPu.jsp?flag=PI&STCODE_POP=11170000167&CRNAMETITLE=IBK+%EC%B9%A0%21%EC%

어린이집 투명한 보육정보를 위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 >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유치원 검색

용산구 ▼ 지번/도로명 지번으로 찾기 ▼ 전체 ▼

전체 ▼ 공공형 전체 ▼

검색

폐쇄된 어린이집의 경우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로 표시된 부분 클릭시 해당항목에 대한 설명이 보여집니다.

*재인증(2회) *재인증(3회) *재인증(4회) *재인증(5회)

0개)

군구 *분류 *평가결과 *정원 *현원 연장 보육 위치 즐겨 찾기

군구	*분류	*평가결과	*정원	*현원	연장 보육	위치	즐거 찾기
영등포구	직장 일반	A	49명	39명	N	Q	☆
영등포구	직장 일반	A	85명	68명	N	Q	☆
영등포구	가정 아간연장	85.33	18명	6명	Y	Q	☆

어린이집

요약	기본 현황	영유아 및 교직원	교육·보육과정
예·결산 등 회계	영양 및 환경 위생	안전 교육·안전점검	평가

평가

평가(인증)등급

어린이집 등급	A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보기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우수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우수
건강·안전	우수	교직원	우수

평가(인증) 정보

평가(인증)유형	평가참여
평가(인증)년월	2019.12
인증유효기간(평가주기)	3년

평가(인증) 이력

년월	상태
2019.12	평가참여
2016.12	재인증
2013.12	신규인증

PART 4

질의응답 Q&A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01

대면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출석 수업의 8시간을 몇 차례에 나누어 수강이 가능한가요?



대면교과목의 8시간 출석수업 시간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총 출석수업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은 별도 실시



02

현장실습 시작 시점에는 평가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으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평가 A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제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점수 A 또는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 시작 이후 A 또는 B 등급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제 시행 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실습을 시작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03

현장실습 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점수 B등급이었으나 실습 중 C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실습이 인정될 수 있나요?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점수 A 또는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실시한 경우, 실습 도중 등급이 바뀌어도 인정됩니다. 단, 분할로 실습을 진행 할 경우 보육실습 시작 당시에 c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인정 불가입니다.

04

2022.1.1. 이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입니다.
2017.2월 이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하였는데 새로운 기준(6주, 240시간)으로 보육실습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 기준

학점은행제를 통해 2018.1.1. 이후 학위 취득 예정이더라도 2017.3.1. 이전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완료한 경우, **현행 기준**으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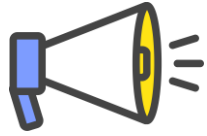
2021년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으로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2021년 2학기에 '보육실습' 교과목으로 4주, 160시간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습 교과목 명칭이 달라도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각각 인정이 되나요?

“ '보육실습'의 유사교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보육현장실습'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명칭이 달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보육실습 기준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

06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연차(여름휴가 또는 연수) 혹은 병가일 경우 공백기간에는 보육실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진 실습 지도교사에게 지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실습 지도교사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에게 실습 지도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 실습지도교사 추가 및 변경 시 보육실습확인서 내 지도교사 정보 추가 작성과 어린이집 원장 날인 후, 지도교사의 1급 자격증 사본 추가 제출 ”



공지사항!

취업예정자 선처리 안내



목적

- 어린이집에 채용예정인 예비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하여 보육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대상

- 어린이집에 채용예정인 예비보육교사(자격증 신청 후 서류제출 완료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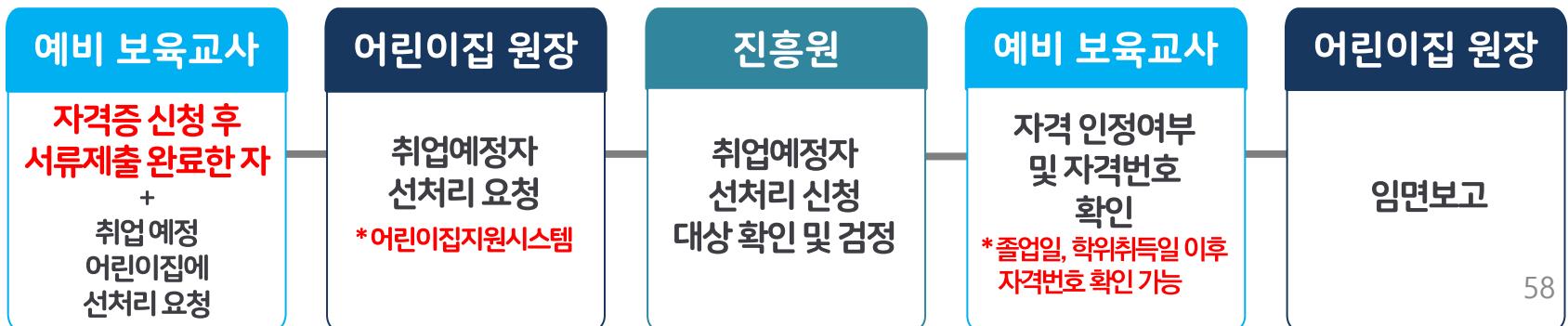
신청기간

-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예정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취업예정자 선처리 메뉴에서 신청

[취업예정자 선처리 절차]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국가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콜센터 (☎ 1661-5666) 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